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3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교육세법 개정 ····· 3

가. 개요 ····· 3

나.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 신설 등(윤영석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정부안) ····· 9

Ⅰ. 개요

1.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3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초중고)는 2015년 756만명에서 2024년에는 613만명으로 10년 사이에 18퍼센트 가량 감소하여 신규교사 채용 감소 및 학교 통폐합·폐교 등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9조원(연평균 6.19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산정되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분야 내 재정 칸막이로 인해 초·중·고 교육과정 외에 대학 이상의 교육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재정운영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운영의 비효율화는 금융·보험업의 원가요소인 교육세를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후생과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 '1조원 초과' 구간은 0.5퍼센트로 조정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 및 연착륙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교육세법 개정

가. 개요

□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액 일부(담배·프로판·천연가스·유연탄 제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부가세(附加稅, surtax) 방식의 목적세임.[1)]

□ 교육세법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의 도입 이전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영업세로서 1%가 과세되었으나, 1977년 부가가치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영업세는 폐지되었으며, 금융 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되었음. 이후 1981년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5년 한시세의 목적세율로서 교육세가 도입되었음.[2)] 이후 1991년 방위세 등이 폐지되며 교육세의 과세대상은 확대되었고 동 세금은 1992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었음.

1) 2025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2) 영업세를 통한 과세 당시에는 수익금액의 1%를 영업세로 납부하였으나 교육세가 도입되면서 세율이 0.5%로 인하되었음.

[교육세법 개정 연혁]

연도	제·개정 내용
‘49~’76년	▪ **부가가치세 도입 전**까지 **금융기관에 영업세**(수익금액의 1%) **부과**
‘77년	▪ **부가가치세가 신설**되면서 **영업세 폐지**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81년	▪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80.7.30.)”의 일환으로 **교육세 도입** (금융기관은 외형에 대한 과세인 영업세 대신 교육세 부과) * (세율) 영업세는 수익금액의 1%를 납부케하였으나 교육세는 세율을 0.5%로 인하
‘91년	▪ 방위세 폐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면서 한시세를 **영구세로 전환**
'95년	▪ '93년 교통세법 신설에 따라 교통세 과세 대상을 교육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
‘08년	▪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추가**
'14년	▪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신설(유연탄, 담배) 및 해당품목 교육세 과세 제외
‘15년	▪ **과세기간을 분기에서 연간으로 변경**하고, **중간예납제도 신설**
‘16년	▪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추가**
'19년	▪ 맥주('19년 이전 종가세 72%) 종량세 전환에 따른 교육세율 정비 - 교육세율 30% 적용 주류: 주세율 70% 이상 → 맥주, 증류주류, 기타 주류
‘23년	▪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자료: 기획재정부

□ 교육세 징수현황을 보면, 2024년 총 5조 3,738억원이 징수되어 전체 국세대비 1.6%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0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변동 등에 따라 증감세가 반복되고 있으며, 국세 대비 교육세의 비중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부터 차례로 1.5%, 1.6%로 증가하였음.

[최근 교육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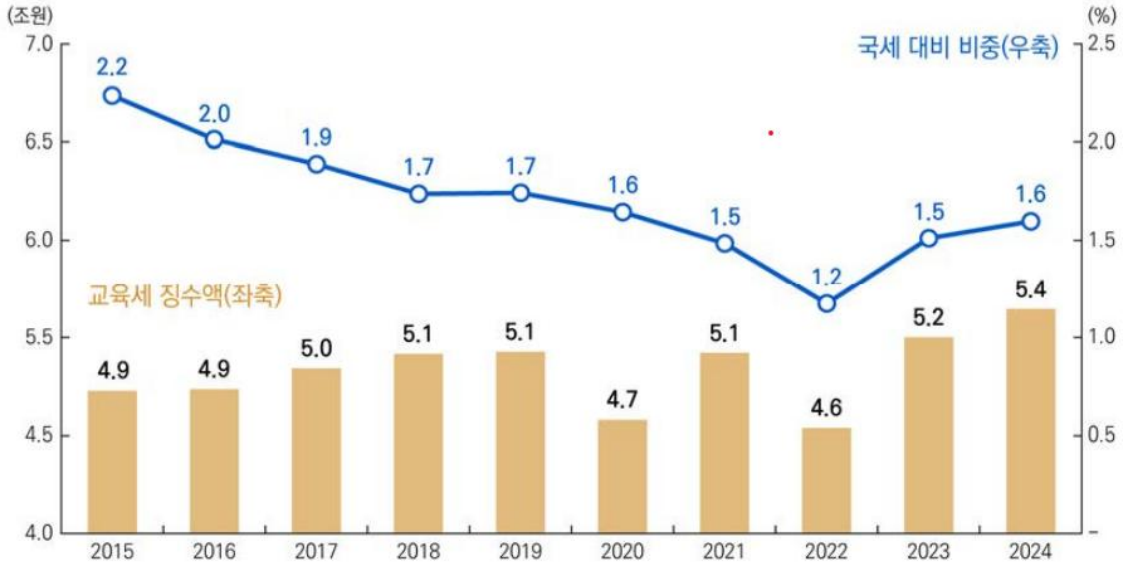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금융·보험업분의 교육세가 전체 교육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은 2020년 총 1조 1,381억원이 징수되어 전체 교육세분 4조 6,937억원 중 24.2%를 차지하였으나, 2024년 총 1조 9,947억원이 징수되어 전체 교육세액 5조 3,738억원 중 37.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 교육세 과세표준별 징수현황]

(단위:억원)

신고년도		'20	'21	'22	'23	'24
국세분	▪ 금융·보험업분	11,381	11,752	12,527	17,504	19,947
	▪ 소비세분	4,403	4,349	4,044	4,501	4,622
	▪ 주 세 분	7,333	6,083	8,649	8,218	7,519
	▪ 교통세분	20,401	24,963	16,692	16,272	16,557
수 입 분		3,409	3,882	4,523	5,011	5,086
지방세분		10	10	9	10	7
합 계		46,937	51,039	46,444	51,516	53,738

자료 : 국세통계포털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4], 지방재정교육교부금[5]에 배분됨. 2025년 예산 기준 교육세 6조 중 1.7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2.2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2.2조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전입됨.

---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교육세 배분 현황]

(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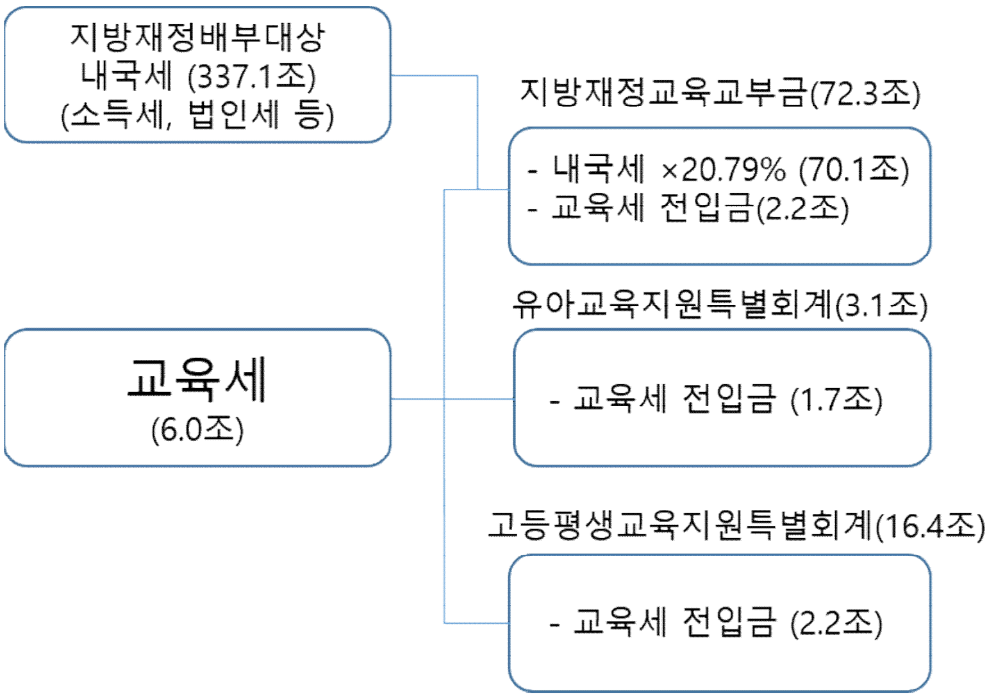

주1: 2025년도 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은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②「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③「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④「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이며, 교육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됨. 그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동 법 및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 과세표준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정의]

구분		법률에서 규정된 과세표준	시행령에서 규정된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포함되는 것)	① 이자 ② 배당금 ③ 수수료 ④ 보증료 ⑤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1)] ⑥ 보험료[2)] 1)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2) 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 공제	① 수입할인료 ②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③ 신탁보수 ④ 대여료 ⑤ 파생결합증권, 증권, 파생상품의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외환의 매매손익 ⑥ 수입임대료 ⑦ 고정자산처분익 ⑧ 자산의 평가[1)]에서 발생한 이익 ⑨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1) 「법인세법 시행령」§75④
	(포함되지 않는 것)		①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②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③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④서민금융법 제2조제3호에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⑤ ~ ⑫ (이하 생략)

나.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 신설 등(윤영석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정부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
<td>□ 과세표준과 세율 (§57의2)
<table>
<tr><th>호별</th><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1</td><td>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1)]</td><td>1천분의 5</td></tr>
<tr><td>2</td><td>「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td><td>100분의 30[3)]</td></tr>
</table>
</td>
<td>□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등
<table>
<tr><th>호별</th><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1</td><td>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1)]</td><td>(정부안) 1천분의 5[2)]
과세표준 1조원 초과시: 50억원 + 1조원 초과 금액 1천분의 10
(윤영석의원안) 1천분의 5[2)]
과세표준 1조원 초과시: 50억원 + 1조원 초과 금액 1천분의 10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5 단일세율 적용 및 해당 수익금액 과세표준 미산입
(박수영의원안) 1천분의 3[2)]
과세표준 1조원 초과시: 30억원 + 1조원 초과 금액 1천분의 5</td></tr>
<tr><td>2</td><td>「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td><td>100분의 30[3)]</td></tr>
</table>
</td>
</tr>
</table>

현 행	개정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분의 15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4]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분의 15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4]
1)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등	1) (정부안) 현행과 같음 (윤영석의원안) 이자, 배당금, 수수료(「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연회비 수익, 카드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마일리지 비용 및 제휴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등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 교육세액은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 초과 불가	2) (정부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 교육세액(본문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5세율 적용)은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 초과 불가
3)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다목 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 100분의 15	3) 현행과 같음
4) 「주세법」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주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주세법」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같은 목 단서 주류 제외) : 100분의 30	4) 「주세법」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정부안) <삭 제> : 100분의 30

현 행	개정안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박수영의원안) 이 법 시행 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 분에 한정하여 적용 (정부안)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윤영석의원안 2025. 10. 27. 발의(의안번호 13728), 박수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37),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0)

□ 개정안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1조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세율을 1%로 인상하고

윤영석의원안은 정부안과 같이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1조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1%로 인상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0.5% 세율을 유지하고 해당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박수영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조원 이하' 구간은 0.3%, '1조원 초과' 구간은 0.5%로 조정하려는 것임.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

과세표준		현행	정부안	윤영석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수익금액	0~1조원	0.5%	0.5%	0.5%	0.3%
	1조원~		1%	1%	0.5%
단서 및 적용례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0.5%	3년간 한시 적용

① (교육세율 조정)

□ 먼저, 교육세율 조정에 대해 상반된 입법취지를 가진 개정안에 대하여 1) 교육세율 인상의 필요성, 2) 교육세율 인상의 응능부담원칙 부합 여부 3) 교육세율 인상의 목적세의 특성 부합 여부 등 주요 쟁점별로 찬반논거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함.

□ 첫째, 교육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

먼저 교육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교육세율 인상은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세율의 변동이 없었던 교육세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981년 교육세가 도입된 이후 교육세가 가산되는 세목 및 과세표준에 대한 개정만 이루어졌을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세율은 개정되지 않았음. 그에 반해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는 1981년 1.8조

에서 2023년 138.5조로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의 상승률에 비례하는 추가적인 세율의 인상은 담세력에 비례한 세율의 인상이라는 측면이 있음.

반면, 교육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금융보험업자는 성장률에 비례하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으로 수익금액의 증가에 비례하여 교육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이며, 특정 산업군의 부가가치 규모 증가를 이유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이중 부담을 초래하고 기타 산업군[6]과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임.[7]

[연도별 금융 ·보험업자 교육세 징수세액]

(단위 : 억원)

구 분	'12	'17	'20	'21	'22	'23
교육세 총액(A)	46,339	50,071	46,927	51,029	46,435	51,506
금융·보험업자(B)	9,319	9,589	11,382	11,752	12,527	17,504
금융·보험업 비중(B/A)	20.1%	19.1%	24.3%	23.0%	27.0%	34.0%

자료: 국세통계포털

□ 둘째, 상위 수익금액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세율 인상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

먼저, 상위 수익금액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6)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총 부가가치규모가 1981년 0.5조에서 2023년 129.8조로 상승하여 총 270배의 성장률을, 전기장비제조업은 1981년대비 2023년 163배의 부가가치성장률을 기록하였음.

7) 금융·보험업자의 부가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이를 대신하여 교육세를 부과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안과 같이 특정 산업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가 모든 산업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과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음. 생명보험협회 의견

대한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중소 금융·보험업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율 인상의 적용 대상을 경제적 여력이 있는 납세의무자(2025년 기준 1조원 이상의 수익금액이 있는 금융·보험회사는 약 60개사로 추정됨)로 한정하여,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세율 인상이라는 입장임.[8)]

또한, 금융·보험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법인세액의 증가율 보다 높아, 담세능력에 비례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해 세율의 조정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보험업 당기순이익 및 법인세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기순이익(전체)	59.3	70.6	97.4	81.0	87.7
증가율	**5.8**	**19.0**	**37.8**	**△16.7**	**8.2**
당기순이익(은행)	12.3	16.9	18.5	21.3	22.4
증가율	**△11.5**	**39.4**	**9.6**	**15.0**	**5.5**
당기순이익(보험)	6.1	8.3	9.2	13.4	14.1
증가율	**13.9**	**36.2**	**11.1**	**45.5**	**4.6**
당기순이익(증권)	5.9	9.1	4.5	5.8	7.0
증가율	**20.8**	**54.2**	**△50.3**	**30.1**	**23.0**
법인세액(전체)	11.4	14.0	18.4	16.3	11.6
증가율	**△0.9**	**22.8**	**31.4**	**△11.4**	**△28.8**

* 1) 금융보험업 전체 당기순이익 및 법인세액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
2) 은행, 보험, 증권업 당기순이익은 금융감독원 업종별 영업실적 자료

자료: 기획재정부

8)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52, 기획재정부

반면, 상위 수익금액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인상된 교육세율 중 일부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누진의 표적과 귀착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자의 주요 산업군인 은행업의 경우 '대출금리 모범규준' 내에 교육세 부담분을 가산금리의 일환인 법적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9] 이 경우, 개정안에 따라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의 교육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부담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 될 수 있음. 또한 보험업자가 인상된 세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보험료 등에 반영할 경우 그 부담 또한 보험소비자에게 전가 될 수 있음.[10]

이는 정부안에서 초대형 금융·보험사의 세부담을 인상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육세율이 인상될 경우 영세·소상공인 등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전가를 방지하는 수단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입장임.

□ 셋째, 교육세율 인상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

9) 대출금리 내에 교육세 부담분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법적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5호)이 발의되었으나 철회되었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만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9호)'이 발의되어 관련 위원회에 계류중임.

10) 보험업은 IFRS 17 회계제도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며,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보험부채에 일시에 반영하여 회계를 처리함. 이때 교육세율이 인상될 경우, 1조원 이상의 수익금액을 가진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미래현금 유출에 해당하는 세부담울 일시적으로 현재의 부채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즉시 감소시켜, 보험계약자의 보호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보험료는 현금유입·유출,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교육세율 인상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감소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생명보험협회 의견

먼저 교육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세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세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고급인재 양성, 세대별 맞춤 교육,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등을 위한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임.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므로,[11]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의 충당을 위해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반면, 교육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교육세율 인상은 목적세의 수익자와 납세자의 불일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목적세는 법률상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간 연관성이 요구됨. 그러나, 교육세의 경우 수혜자 부담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고 세입과 세출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아, 개정안과 같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목적세의 일반적인 특성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12]

---

11) 「교육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은행연합회 의견

□ 한편, 박수영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규정과 더불어 적용례 및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용례를 통해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조정 방향 및 교육세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간 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개선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세율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조세특례제도와 달리 일반적 과세기준에는 적용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 적용례와 관련하여 교육세율 인상 시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재무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13]이 제기되었음. 금융·보험업 중 보험산업의 경우 장기보험 구조 및 보험부채 측정 방식[14]으로 교육세율 인상이 다른 금융·보험업에 비해 재무건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교육세율 인상 시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15]에 즉시 영향을 주어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하락하게 됨. 이 경

13) 생명보험협회 의견

14) 이는 교육세율 증세로 인한 장기간의 미래현금 유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일시적으로 부채에 반영하기 때문임.

15)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시 보험금 지급이행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법적 최소기준은 100%, 권고기준은 130%임.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측정하나, ❶기준금리·시장금리 하

우 보험계약자 보호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부채에 대한 부담분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전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교육세율의 조정과 더불어 박수영의원안과 같이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재정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세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배분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교육세로부터 배분되는 금액과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20.79%)[16]로 구성됨.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17] 및 이로 인한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지방재정교부금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18]이며,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박수영의원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세가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세율을 인상하여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 보다는, 한시적으로 교육세율을 인하하고, 3년간의 연착륙 기간을 두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를 개선할

락, ❷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가용자본이 줄어들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음. 교육세율이 인상하는 경우 보험사는 장기간 미래현금 유출을 일시에 반영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위해 자본성 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는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17) 학령인구는 2015년 756만명에서 2024년에는 613만명으로 10년 사이에 18퍼센트 가량 감소하였음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9조원(연평균 6.19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재원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정부는 교육세의 배분 우선순위를 현행 ①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③보통교부금 순서에서 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①'영유아특별회계→③보통교부금 순서로 개편 예정이라는 입장임.[19]

[교육세 및 특별회계 개편 추진안]

현재('25년 6조원)		개편안
❶ 유특회계 전출(1.7조원)	⇨	❶ 고특회계 전출(금융보험업분(증세포함))
❷ 고특회계 전출(2.2조원)		❷ 영유아특별회계(신설) 전출
❸ 보통교부금(2.2조원)		❸ 보통교부금

(현행) 교육세('25년 6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편성(1.7조) 이후 잔액의 5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2조), 그 나머지를 교부금(2.2조)에 전출

(개편안)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을 고특회계에 우선 편성하고, 신설 영유아특별회계에 나머지의 60%를 전입, 40%를 교부금에 지원

자료: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106.3조원 편성, 보도자료, 2025.8.29. 자료 재가공

19) 이와 관련하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60),「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4),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2213176)이 발의되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②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에 대해 최고구간세율 (1%) 적용 제외)

□ 윤영석의원안은 인상된 교육세율을 적용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20]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0.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교육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비용 전가를 최소화할 수 있음.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세율을 2배(0.5%→1%) 인상할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신용카드사가 1차 소비자인 신용카드 사용 가맹점과, 간접적 소비자인 일반 소비자들에게 증세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0.5%의 세율로 과세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전체 수익 중에서 가맹점

---

2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수수료는 23.2% 수준에 불과해, 신용카드사의 나머지 수익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 재정확보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상 수익금액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21]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로, 외환 조절 등 거시경제 목적의 금융거래에 한정하여 저세율로 과세하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한정하여 과표에 관계없이 높은 세율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금융·보험업내 유사직군인, 보험업, 은행업 등의 이자수익 등에 대해서도 저세율 과세로 전환을 요구할 우려가 있고, 이는 세수의 일실로 이어질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21) 환매조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파는 채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 사이에 시중통화 수위와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